##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3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김용만・박지원・이수진

이정문 • 박상혁 • 임미애

복기왕 • 권칠승 • 이강일

황정아 · 백승아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현행법에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 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1인당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때 예금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5년 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험금 한도 결정이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제3항).

#### 법률 제 호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5호"를 각각 "제1항제4호의2 및 제5호"로 한다.

4의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제3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그 금액을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5년마다 제2항에 따른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한도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금융위원회는 이 법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금 한

도를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
	<u>하는 위원 2명</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② 제1항제4호의2 및 제5호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③ 제1항제4호의2 및 제5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	②
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	
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	
도로 한다. <u>&lt;후단 신설&gt;</u>	<u>이 경우 그 금액을</u>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u>수 있다.</u>
<u>&lt;신 설&gt;</u>	③ 금융위원회는 5년마다 제2

	항에 따른 보험금 한도의 적정
	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u>한다.</u>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